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(박홍근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621

발의연월일: 2020. 7. 8.

발 의 자: 박홍근・양이원영・최종윤

양정숙 · 양기대 · 박성준

맹성규・이수진(비)・조오섭

박영순 · 홍성국 · 홍익표

유미향 · 서동용 · 김용민

남인순 의원(16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사업주가 근로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을 줄일 수 있는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건강을 유지 ·증진하여야 한다는 책무를 규정하고 있음.

이에 따라 「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」에서는 사업주가 근로 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갖추도록 하고 있으나, 여전히 많은 사업장에서는 근로자가 적절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이 없거나 휴게시설이 열악하여 근로자가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데에 한계가 있음.

이에 사업주가 일정한 설치 및 관리 기준에 따라 근로자가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갖추도록 함으로써 근로자의 건강권을 보호하려는 것임(안 제128조의2 및 제172조제3항제2호의2 신설).

법률 제 호

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

산업안전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장제1절에 제12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제128조의2(휴게시설의 설치)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갖추어야 한다. 다만,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제외한다.
 -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휴게시설을 인체에 해로운 분진 등을 발산하는 장소나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장소와 격리된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. 다만, 갱내 등 작업장소의 여건상 격리된 장소에 휴게시설을 갖출 수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.
 - ③ 제1항에 따른 휴게시설의 위치·규모·환경 등 설치 및 관리 기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.

제175조제3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2의2. 제128조의2를 위반하여 휴게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휴게 시설의 설치 및 관리 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| 현 행 | 개 정 안 |
|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|
| <u> <신 설></u> | 제128조의2(휴게시설의 설치) ① |
| | 사업주는 근로자가 휴식시간에 |
| |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갖 |
| | 추어야 한다. 다만, 상시 4명 |
| |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 |
| | 업주는 제외한다. |
| |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휴 |
| | 게시설을 인체에 해로운 분진 |
| | 등을 발산하는 장소나 유해물 |
| | 질을 취급하는 장소와 격리된 |
| |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. 다만, |
| | 갱내 등 작업장소의 여건상 격 |
| | 리된 장소에 휴게시설을 갖출 |
| | 수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. |
| | ③ 제1항에 따른 휴게시설의 |
| | 위치・규모・환경 등 설치 및 |
| | 관리 기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|
| | <u>정한다.</u> |
| 제175조(과태료) ①・② (생 략) | 제175조(과태료) ①·② (현행과 |
| | 같음) |
|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| 3 |
|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500만원 | |
|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 | |

| 1.・2. (생 략) | 1.•2. (현행과 같음) |
|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<u><신 설></u> | <u>2</u> 의2. 제128조의2를 위반하여 |
| | 휴게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 |
| | 거나 휴게시설의 설치 및 관 |
| | 리 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|
| | <u>자</u> |
| 3. • 4. (생 략) | 3.•4. (현행과 같음) |
| ④ ~ ⑦ (생 략) | ④ ~ ⑦ (현행과 같음) |